산학협력단 정책기획위원회 규정

제정 2012. 12. 01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단"이라 한다)의 사업전반에 대한 발전 전략과 산학협력 및 재정지원사업의 기획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산학협력단 정책기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 및 역할) 산학단에서 수행하는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재정지원사업, 산학협력사업, 대외 연구과제사업 등(이하 "재정지원사업"이라 한다)의 사업기획과 산학단 사업수행의 효율성 증진과 조직 상호간의 연계강화촉진을 강화하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제3조(구성) ①위원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, 산학협력팀장, 연구지원팀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는 15인 이하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- ③위원회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제4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다.
 -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제6조(활동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 - 1. 산학단 장단기 발전 전략 수립 및 기획 활동
 - 2. 단과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사업의 기획 및 집필팀 구성 자문
 - 3. 재정지원사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대외 전문기관 및 기업체의 연계활동
 - 4. 교내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기획
 - 5. 기타 산학단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기획 및 자문 활동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2년 12 월 1일부터 시행한다.